
Policy and Law Report _Vol.9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6.28 ~ 7.4) -

July 6,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p> •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 - 비(非) 통신 기업도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함.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5세대(5G) 기술 환경 및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5세대(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대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제조사·이통사 등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8GHz 대역과 함께 4.7GHz(6GHz 이하) 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공급하기로 결정 ② 28GHz 대역은 4.7GHz 대역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 ③ 5세대(5G) 특화망에 적합한 할당 심사기준 및 간소한 심사 절차 마련 등이 있음 	2021-06-30
산업통상 자원부	<p> • 식약처-국표원, 제품안전·K-방역모델 분야 등 업무협약 체결 </p> <p>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간 경계가 모호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힘. 이를 위해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제품의 안전관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등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② K-방역 모델(의료 제품 분야) 국제 표준안 개발, ③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④ 공동 관심분야의 안전·표준·첨단기술 등 연구개발, ⑤ 위해우려가 있는 대외 소통 필요 사업의 공동 조사 등이 있음</p>	2021-06-30

부처	내용	일시															
국토 교통부	<p>•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수립·확정 - 자율주행 셔틀,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전략 제시</p> <p>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21~'25) 자율주행차의 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함</p> <p>「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정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②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환경 조성, ③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④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⑤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 등이 있음</p>	2021-06-30															
법제처	<p>• 「고용보험법」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2021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p> <p>법제처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4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6.27.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함</p> <table border="1" data-bbox="320 1272 1311 1816"> <thead> <tr> <th>주요 법령</th> <th>주요 시행내용</th> <th>시행일</th> </tr> </thead> <tbody> <tr> <td>「고용보험법」</td> <td>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 마련</td> <td>7. 1.</td> </tr> <tr> <td>「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td> <td>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 제도 개선</td> <td>7. 13.</td> </tr> <tr> <td>「수의사법」</td> <td>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td> <td>8. 28.</td> </tr> <tr> <td>「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td> <td>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td> <td>9. 1.</td> </tr> </tbody> </table>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 마련	7.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 제도 개선	7. 13.	「수의사법」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8.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9. 1.	2021-06-28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 마련	7.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 제도 개선	7. 13.															
「수의사법」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8.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9. 1.															

부처	내용		일시
	「행정기본법」	제재처분·과징금의 기준 명확화 및 행정의 입법활동에 대한 원칙 마련	9. 24.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폭언으로부터 일반 근로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절차 마련	10. 2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11. 19.
	「식품위생법」	공유주방의 영업 근거 마련 및 안전관리 제도 신설	12.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	12. 31.
금융 위원회	<p>•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p> <p>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프로젝트투자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행 7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고시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반영(안 제1-9조),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안 제1-9조), ③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66조) 등이 있음</p>		2021-06-30

부처	내용	일시				
금융 감독원	<p>•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 업종 사전예고</p> <p>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점검하게 될 4가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고, 회사는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유의하여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인도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p> <p style="text-align: center;">< 2022년 중점점검 회계이슈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 유의 • 손상평가(회수가능액 추정 등) 수행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의 합리적인 증거 <p>※(업종)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도·소매업, 항공운송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p>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른 수익 인식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 식별 ③거래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무이행시 수익 인식 • 거래의 객관적 증빙 및 실질 유의 •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식 공시 <p>※(업종)전 업종</p> </td> </tr>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부채분류에 따른 측정의 적정성 *당기손익·공정가치 부채, 금융보증계약 등 • 금융부채 관련 주식 공시 *금융위험(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 질적·양적 정보 <p>※(업종)제조업(음료, 금속, 기계, 운송장비), 건설업, 운송업</p>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비용 표시 *재무구조취약기업 등 유의 • 영업부문 관련 주식 공시 *보고부문별 정보(당기손익, 자산 등) 및 지역별, 주요 고객별 수익 등에 대한 정보 <p>※(업종)전 업종</p>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 유의 • 손상평가(회수가능액 추정 등) 수행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의 합리적인 증거 <p>※(업종)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도·소매업, 항공운송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른 수익 인식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 식별 ③거래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무이행시 수익 인식 • 거래의 객관적 증빙 및 실질 유의 •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식 공시 <p>※(업종)전 업종</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부채분류에 따른 측정의 적정성 *당기손익·공정가치 부채, 금융보증계약 등 • 금융부채 관련 주식 공시 *금융위험(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 질적·양적 정보 <p>※(업종)제조업(음료, 금속, 기계, 운송장비), 건설업, 운송업</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비용 표시 *재무구조취약기업 등 유의 • 영업부문 관련 주식 공시 *보고부문별 정보(당기손익, 자산 등) 및 지역별, 주요 고객별 수익 등에 대한 정보 <p>※(업종)전 업종</p>	2021-06-28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 유의 • 손상평가(회수가능액 추정 등) 수행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의 합리적인 증거 <p>※(업종)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도·소매업, 항공운송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른 수익 인식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 식별 ③거래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무이행시 수익 인식 • 거래의 객관적 증빙 및 실질 유의 •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식 공시 <p>※(업종)전 업종</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부채분류에 따른 측정의 적정성 *당기손익·공정가치 부채, 금융보증계약 등 • 금융부채 관련 주식 공시 *금융위험(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 질적·양적 정보 <p>※(업종)제조업(음료, 금속, 기계, 운송장비), 건설업, 운송업</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비용 표시 *재무구조취약기업 등 유의 • 영업부문 관련 주식 공시 *보고부문별 정보(당기손익, 자산 등) 및 지역별, 주요 고객별 수익 등에 대한 정보 <p>※(업종)전 업종</p>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p> <p>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이행비용을 정부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구역전기사업자를 추가하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30년 이후에는 5퍼센트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연도별 혼합의무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해당 연도</th> <th>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21년</td> <td>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td> <td>0.03</td> </tr> <tr> <td>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td> <td>0.035</td> </tr> <tr> <td colspan="2">2022년</td> <td>0.035</td> </tr> <tr> <td colspan="2">2023년</td> <td>0.035</td> </tr> <tr> <td colspan="2">2024년</td> <td>0.04</td> </tr> <tr> <td colspan="2">2025년</td> <td>0.04</td> </tr> <tr> <td colspan="2">2026년</td> <td>0.04</td> </tr> <tr> <td colspan="2">2027년</td> <td>0.045</td> </tr> <tr> <td colspan="2">2028년</td> <td>0.045</td> </tr> <tr> <td colspan="2">2029년</td> <td>0.045</td> </tr> <tr> <td colspan="2">2030년 이후</td> <td>0.05</td> </tr> </tbody> </table>	해당 연도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03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035	2022년		0.035	2023년		0.035	2024년		0.04	2025년		0.04	2026년		0.04	2027년		0.045	2028년		0.045	2029년		0.045	2030년 이후		0.05	2021-06-29
	해당 연도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03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035																																		
	2022년		0.035																																		
	2023년		0.035																																		
	2024년		0.04																																		
	2025년		0.04																																		
	2026년		0.04																																		
	2027년		0.045																																		
	2028년		0.045																																		
	2029년		0.045																																		
	2030년 이후		0.0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하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중에 필요한 시험업무를 지정받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인력·시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및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p> <p>이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을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등을 포함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1-06-30
고용노동부	<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p> <p>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p> <p>그리고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서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 그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0. 9. 3. 선고 2016두32992)이 선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교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2021-06-2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금융위원회	<p>•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00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p> <p>이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세부 사항, 자본적정성의 점검·평가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의 시기·방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개선 계획 제출명령의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지정 해제(안 제6조 및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는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하며,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p>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안 제9조 및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정책 및 위험관리기준의 추진 또는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점검하도록 함. -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방법, 내부통제를 위한 전담 조직·인력, 이해상충 방지·관리를 위한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기준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위험관리의 절차·방법, 위험관리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를 위한 절차·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 <p>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 점검·평가 기준(안 제1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적정성의 점검·평가 기준을 자기자본의 현황·규모, 중복지본의 현황·규모,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및 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으로 정함. 	2021-06-2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금융 위원회	<p>④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안 제1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는 3년마다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 <p>⑤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안 제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가 대표금융회사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미만인 경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로 정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제출 사유, 기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제출기한은 제출명령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p>•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p> <p>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780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p> <p>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과 투자금에 대한 만기 상환 및 이자 지급이 없고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투자금에 대한 지분의 인수 규모가 결정되는 투자 방식을 보증연계투자 방식에 추가하려는 것임</p>	2021-06-29
	<p>•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01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p> <p>이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대상 및 선정기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自救)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 절차, 금융위원회에 두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1-06-29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정거래 위원회	<p>• 「<u>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p> <p>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직영점 운영 의무화의 예외 등을 구체화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을 일부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5조의5, 안 [별표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가맹사업법(21.11.19 시행 예정)은 가맹본부의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함 - 또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방식이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p>이에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으로 예외사유를 구체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법은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에 임원의 운영기간을 직영점 운영기간에 합산토록 함 <p>②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확대 (안 [별표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및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p>③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이양 (안 제3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5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개 시·도지사에게 부여함 <p>④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명확화 (안 [별표1]) 등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시행령상 정보공개서에 공정위로부터 조치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4개 시·도지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함에도 해당 사실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고 있어 이에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2021-06-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제시기간 :6/28(금)~8/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로 제출	
금융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p>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2항)됨에 따라, 운용사가 작성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현재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종목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신탁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함</p> <p>※ 의견제시기간 :6/28(금)~8/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p>	2021-06-28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p> <p>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p> <p>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별도 규율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중국·일본 및 EU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 (안 제1조부터 제28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이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계시판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p>② 위해방지 협조의무 (안 제18조 및 제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 가 리콜명령 등 발동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p>③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33조부터 제48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수 중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구조의 특성 상 소비자·플랫폼·입점업체의 3자가 관련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분쟁조정 기구가 필요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p>④ 동의를결제도 도입 (안 제56조 및 제5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함 	2021-06-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⑤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 (안 제5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사이트 폐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서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그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므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백한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사이트 내 경고 문구의 게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1인)」</p> <p>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는 이용료 외에도 투자 원금 손실 등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p> <p>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 제공에 적합한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을 허용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또한, 허위신고 처벌 및 임원 변경 보고의무 신설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영업규율을 강화하며,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퇴출제도를 정비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투자자문업의 범위 확대 (안 제7조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 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를 투자자문업에 포함. <p>②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정비 (안 제101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 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p>③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확대 (안 제101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p>④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결격사유 확대 (안 제101조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포함 	2021-06-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직권말소 사유 확대 (안 제101조제9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직권말소 사유에 제101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포함 <p>⑥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안 제101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 <p>⑦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안 제101조의3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 <p>⑧ 유사투자자문업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안 제446조제17호의3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도 미신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 	
	<p>• 「<u>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0인)</u>」</p> <p>최근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가맹본부가 택시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택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는 실정임</p> <p>이에 가맹본부가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 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3 및 제41조제3항제3호·제4호 신설 등)</p>	2021-06-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이수진의원 등 17인)」</p> <p>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둔 과징금이 2조원에 달함에도 징수된 과징금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술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사업자, 납품업자 등의 구제에 사용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있음</p> <p>피해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밝히는데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소송 장기화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편재로 인하여 승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그 결과 피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전받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생계 곤란에 처하는 이증고를 겪고 있음</p> <p>이에 대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함 (안 제3조) ③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 (안 제6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안 제7조) ⑤ 피해자 지원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9조) 	2021-07-0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의원 등 23인)」</p> <p>새로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바, 최근 발생한 인공지능 챗봇(AI chatbot) ‘이루다’ 사건과 배달 앱 요기요 사례,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낙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환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p> <p>따라서 인공지능을 기술적·산업적 측면에서 진흥하여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정책방향과 인공지능이 개인과 공동체에 신뢰받는 문명의 이기(利器)가 되도록 하는 입법적 차원의 준비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p> <p>이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며, 인간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존엄성과 직결되는 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인공지능 사용 고지의무 및 사전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등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 그리고 인간을 위하는 것이 되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1조) ② 인공지능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고 인간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기본원칙을 수립함 (안 제3조) ③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④ 정부는 인공지능사회 정립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공지능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11조) ⑤ 정부는 인공지능사회의 정립에 필요한 정책 개발 연구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기준을 정하고, 표준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⑦ 윤리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서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p>2021-07-01</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⑧ 특수활용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사결정 원리 및 최종결과 등을 설명하도록 함 (안 제20조)</p> <p>⑨ 인공지능사업자가 특수활용 인공지능을 개발·제조·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인공지능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안 제21조)</p> <p>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수활용 인공지능에 대하여 사전 고지의무 및 신고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p> <p>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의 정립과 관련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p>	
<p>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p>	<p>•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p> <p>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하여 판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대규모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p> <p>그러나 현행법상 민간분야에서만 현금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 시 상생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p> <p>이에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 함 (안 제22조제6항 신설)</p>	<p>2021-06-30</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p>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p> <p>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을 위한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등의 발전원 및 수소를 매개로 한 친환경 운송수단 등의 활용과 같은 분야에 정책적·기술적 지원도 강화해야 함. 또한 세계 최초로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p> <p> 이와 같이 지금의 탄소사회에서 탄소중립을 넘어 무탄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수소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의 공급의무화, 점진적인 청정수소 기반구축과 보급활성화를 위한 등급별 수소인증제 도입, 산업단지 및 대규모 빌딩 등에 대한 연료전지 설치 확대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수소산업의 수요 창출과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및 무탄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p> <p> 주요 내용으로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정수소, 수소발전, 청정수소발전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제10호·제11호·제12호 신설) ②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 등을 명시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1항, 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③ 연료전지 설치 대상을 대형건물 및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함 (안 제21제1항) ④ 연료전지의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2 신설) ⑤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및 인증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 신설) ⑥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 판매·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5 신설) ⑦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소 및 청정수소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6 신설) ⑧ 판매·사용의무자 및 공급의무자가 판매·사용의무량 또는 공급전력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함 (안 제25조의7 신설) ⑨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안 제57조제4호의2 신설) ⑩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2021-07-0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p>•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p> <p>대기 중에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유증기)에 대하여 현행법에는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회수된 유증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입법의 미비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주택가 등에 인접한 주유소의 경우에 유증기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임</p> <p>이에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이외에 ‘처리’를 명시함으로써 시설 인근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안 제44조)</p>	2021-06-30
국토교통 위원회	<p>•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4인)」</p> <p>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범위에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용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p> <p>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p> <p>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p> <p>이에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안 제74조)</p>	2021-07-01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7/6(화) 10: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	
	7/8(목) 09:30	정보위 전체회의 -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등	
국회사무처	7/9(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46호 발간	
국회도서관	7/6(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65호 발간 -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정(안)	
	7/6(화)	현안입법 알리기 - 행정기본법 제정	
	7/8(목)	제14차「밥 대신 지식강좌」실시 - 의료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	ZOOM
예산정책처	주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 추경안의 편성요건 재원 재정건전성 경제여건등의 총괄 분석 및 각 부처 개별사업 분석 등	
	7/7(수)	「NABO Focus 제34호」 발간 - 탄소세 논의 동향	
입법조사처	7/8(목) 09:30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의 방향」 학술세미나 개최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모색	프레스 센터
	주중	「이슈와 논점」 -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5(월) 10:00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토론회	오기형, 김승원, 김용민, 유정주 의원실 외	오기형TV 생중계
7/5(월) 13:30	혁신인가? 착취인가? -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이동주, 우원식, 이학영, 진성준 의원실 외	중소기업 중앙회 2층
7/5(월) 14:00	물류센터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	오영환 의원실	의원회관 306호
7/6(화) 10:00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 소득세·법인세·상증세에 부가세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과 부가가치세의 누진성 도입 모색을 중심으로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외	정의당TV 생중계
7/6(화) 10:00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포럼	이상헌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글래드호텔 B홀
7/6(화) 10:00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강득구, 강민정 의원실, 경기도 외	글래드호텔 A홀
7/7(수) 10:00	먹거리 WASTE 해결을 통한 일상에서의 탄소중립 법제화 방안 토론회	강은미 의원실, WFP 한국사무소 외	서울 여성플라자
7/9(금) 10:00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 인가	최혜영, 김민석 의원실	김민석TV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28(월) 14:00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이학영, 민병덕, 배진교 의원실	은행회관 2층
6/28(월) 14:00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 대책은?	유동수 의원실	입법조사처
6/28(월) 14:00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진성준, 이동주 의원실, 을지로위원회 외	중소기업 중앙회 2층
6/29(화) 10:00	과학기술강국포럼 창립식	과학기술강국포럼 창립준비위원회	한국과학 기술회관
7/2(금) 10:00	조달시장, 적정가격 받기	김경만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희훈** | 소속변호사 T. 02-316-7917 E. hhpark@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